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 강북구 수유동 310-15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우리 구 수유동 310-15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가칭)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 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동의철회서, 반대 동의 철회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동의 또는 반대동의서 철회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 (區 → 市)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역 계 : 수유동 310-15번지 일대

※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 성 명 : 김용복

○ 연락처 : 010-6335-4369 (사무실 : 02-3157-3400)

3.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

- 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수유동 310-15번지 일대 제 8 호
번호부여일자	2025. 07. 28.
확인(인)	

4. 공개 장소

- 강북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신속통합기획 > 신속통합기획 번호부여 현황
- 번호부여 신청구역의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5. 기타 안내사항

-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 (區→市) 또는 별도 區 요청일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 후보지로 선정,미선정 및 보류된 구역은 건축허가등 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따른 구역지정 기본요건 미충족 및 후보지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이 불가함.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 원칙에 따라, 다수 추진주체가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에 대하여 동의서 징구할 경우 후보지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후보지 공모 신청 전 구역계를 추진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 동의서 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함.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2024.11.12.)에 따른 찬성동의서, 반대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동의 철회서만 인정함.
→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는 강북구청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동의서와 반대동의서 중복제출시 마지막 날짜 제출내용으로 간주 처리됨.

- 서울시에서 '25.6.5일 안내한 기존 개정 동의서 양식은 '25.07.27일 까지 사용 가능함.
- 서울시에서 안내한 추가 개정된 신규 동의서는 2025.07.28.일 신규 동의서 교부 이후사용 가능함.